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 고 박 창 환 외 5명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건 제소의 동기 및 소의 이익

가. 원고들의 중복제소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소송은 원고들 대부분(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현재 일본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 항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실제적으로 동일한 법률효과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주권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국가의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게 될 경우 이는 이른바 국제적 중복제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 남 빌 딩 9 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국제적 중복제소는 전후소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첫째, 전소의 원고가 다시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소를 제기하는 원피고공통형 중복제소와 둘째, 전소의 피고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소의 청구취지를 역으로 주장하는 원피고역전형 중복제소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피고공통형 중복제소의 경우 전소의 원고가 다른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 피고의 자산이 다른 국제재판관할하에도 소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동시에 여러 국제재판관할하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이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원고가 선행소송의 절차 또는 진행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보다 유리한 다른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전소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고가 여러 국제재판관할하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를 위협하고자 하는 경우, (4) 위 3가지 동기의 결합인 경우 등입니다.

원피고역전형 중복제소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른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 피고가 선행소송의 법정에서의 절차 또는 진행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보다 유리한 다른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전소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하는 경우, (2) 원고에 대하여 소송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화해 등의 유리한 결과를 기도하려는 경우, (3) 위 2가지 동기의 결합인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 남 빌 딩 9 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경우 등입니다.

나. 중복제소의 문제점 및 규제

이와 같은 국제적 중복제소는 (1) 중복제소를 당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수의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응소를 강제함으로써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느 한 곳의 소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2) 수개의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중복처리하게 되어 보다 충실한 심리를 받아야 할 다른 사건의 처리에 소요될 사법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공정하고 경제적인 사법의 이념에 반하게 되며, (3) 특히 두개의 소송의 결과가 서로 저촉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같은 대내적 법률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대부분의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수개의 국제재판관할 영역에 걸치는 상황에서는 거래의 안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과 위험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중복제소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각국 법원의 판례와 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국제적 중복제소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 및 국제적 조약의 추진도 시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적 중복제소의 이러한 폐단을 고려할 때, 특히 전소의 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보다 유리한 다른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에서 다시 소송을 함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으로써 전소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하는 중복제소나 상대방 당사자를 위협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중복제소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고가 법정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을 선택하여 피고의 응소를 강제한 뒤에 다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중복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원고의 실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등의 부담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수단인 소송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위협이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본건 소송의 검토

본건 소송은 앞서 본 분류에 의하면 이른바 원피고공통형 중복제소가 된다고 할 것인바, 본건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본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 중임에도 다시 우리나라에서 본건 제소를 한 이유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원고들의 제소를 살펴보면, 그 동기에 있어 당초부터 피고의 대한민국내의 자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내에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정도의 피고의 자산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피고의 자산이라고 할만한 것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은 피고의 부산연락사무소의 임대보증금 정도를 상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일본국내에 소재하는 피고의 자산규모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규모, 영업액수, 사업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본국 내에서 그 권리를 집행, 실현하는데 충분한 재산이 있어 굳이 일본국 외의 타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다른 재판관할권 내에서 집행을 시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일본국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된 선행소송을 제쳐두고 새로이 본건 소송을 제기한 동기는 일본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유리한 법정이라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법정에 이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불리를 만회하려고 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수개의 국제재판관할하의 법정(일본, 한국 등)에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소송부담을 가중시키고 피고를 압박하여 유리한 내용의 합의의 도출 기타 분쟁의 유리한 해결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상과 같은 이유들이 복합된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일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화해를 거부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내세워 원고들이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본건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게 된 경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본건 소송의 제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 소송이 피고를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본건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하기 위한 의도에 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와 같은 원고들의 의도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여부를 차지하고, 재판제도를 그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 비법률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의 본건 소송의 제기는 피고에게 일본국 및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반복적인 응소를 강제함으로써 경제적 및 경제외적인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게 되고, 일본국 및 대한민국의 법원이 동일한 소송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심리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제적인 사법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건 제소는 허용될 수 없는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국제적 중복제소의 처리

가사 원고들의 본건 제소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오늘날 각국은 다양한 입법과 해석을 통해 중복제소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적 중복제소에 관한 영미법적 접근

미국과 영국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ces)를 통해 중복제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하에서는 법원은 비록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재판관할을 가지더라도 (1) 대체법정지가 존재하고, (2) 모든 요소를 형량하여 법정지가 당해 사건을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대체법정지가 더 적절한 법정일 때에는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려되는 형량의 요소들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는 사익적 요소들과 공익적 요소들이 있는데 사익적 요소로서는 (1) 증거방법에 대한 접근의 상대적 용이성, (2) 원하지 않는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강제절차의 이용가능성과 원하는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비용, (3) 소송을 위하여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 현장검증의 가능성, (4) 사건의 심리를 용이하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하는 기타의 모든 현실적인 요건들과, (5) 판결의 집행가능성 등이 고려되며, 공익적 요소로서는 (1) 소송이 발생지 법정에서 처리되는 대신 사건이 다수의 미제 사건을 가진 법정에서 처리되는 경우의 소송운영상의 어려움, (2) 소송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배심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당부, (3) 지역적인 분쟁을 그 지역에서 해결할 그 지역의 이익, (4) 복잡한 국제사법적인 문제나 생소한 타국 법률의 적용문제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고 익숙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따른 이익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직접적으로 국제적 중복제소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중복제소 상황이라는 점은 법원이 위에서 본 사익적, 공익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대체법정지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국제적 중복제소 자체가 부적절한 법정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특히 어느 법정에서의 소송절차가 다른 법정에 비해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이는 적절한 법정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는 따로, 소송경합의 법리(다른 곳에 계속된 소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송의 법리, Lis Alibi Pendens)는 코먼로(Common Law)상 발전된 법리로서 이 법리는 외국의 법정에 소송이 계속되었을 때 성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신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소송절차를 중지하기 위하여는 (1) 당사자와 소송물의 유사성, (2) 사법적 효율과 경제성의 증진 여부, (3) 대체법정지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적절성, (4) 어느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5) 소송제기의 선후관계의 5가지 요소가 고려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미법상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소송경합의 법리는 비록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제적 중복제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다른 국가에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법원에 동일한 소송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 미국이나 영국의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소송경합의 법리에 의하여 이러한 후행소송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그러한 후행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이나 영국의 법원은 자국의 법원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국제적 중복제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타국의 법원을 포함한 다른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을 진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발하기도 합니다.

나. 국제적 중복제소에 관한 독일의 태도

독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국제적 중복소송을 독일 민사소송법상의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기초로 하여 독일 국내법상의 중복제소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것이 독일국내에서 승인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는 그 외국판결은 독일국내에서도 기판력을 가지므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정한 독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국제적 중복소송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승인예측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견해는 외국판결의 적극적인 승인예측을 조건으로 외국에서의 소송계속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소송계속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점에서 외국의 소송계속의 승인을 외국판결 승인의 전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하여는 나중에 제기된 국내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다. 국제적 중복제소에 관한 일본의 태도

일본에서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일본민사소송법 제142조(구민사소송법 제234조)의 법원은 일본 법원만을 의미하고 외국의 법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제적 중복제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소수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국제적 중복제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론적 근거로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승인예측설을 취하는 견해(동경지방재판소 평성원년 5월 30일 선고 "宮越幾工" 사건)와 영미법의 입장을 따라 적절한 법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靑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7001 · 254-1006
F A X : (051)241-7003

정지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동경지방재판소 평성3년 1월 29일 선고 "眞綺物産" 사건)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승인예측설을 취하는 입장은 독일에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것이 국내에서 승인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는 그 외국판결은 국내에서도 기판력을 가지므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정한 일본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국제적 중복제소를 제한하여야 하고 법원은 중복하여 제기된 국내소송을 각하 또는 중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미법적 접근방법에 따라 국제적 중복제소의 문제를 국제재판관할 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는 종합적인 비교, 형량에 따라 외국과 내국의 어느 곳이 적절한 법정지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비교형량설", "적절한 법정지설"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라고 판단되면 내국의 소를 각하하거나 소송절차를 중지할 것이나 만일 내국이 적절한 법정지인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며 외국에서의 소송계속은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내지는 특단의 사정의 하나로 보게 되므로 국제중복제소의 문제는 국제재판관할 이론의 일부로 해소되게 됩니다.

라. 우리나라의 학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선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 금지는 원칙으로 국내법원에서의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이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靑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유로 외국에서의 소송계속을 무시할 것이라는 견해, 중복판결을 피하고 공동판결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국제관할원칙과 외국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명문근거에 기하여 이들 문제와 연관하여 포괄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견해, 일본의 비교형량설과 같이 국제중복제소는 국제재판관할 이론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견해 등의 소수설이 있으나, 통설은 독일의 다수설과 같이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장래 한국에서의 승인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를 유추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설의 견해는 국제사회에서의 섭외사법생활 관계의 안정과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다시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듭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청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적 중복제소의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선고된 바가 없습니다.

마. 본건에의 적용

(1) 승인예측설에 따른 검토

통설의 견해에 따라 본건 소송에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국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 선고될 판결이 장래 대한민국의 법원에 의하여 효력이 승인될 것으로 예견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1) 법령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회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하였으며,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4)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는 위 (1)에 관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일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할 어떠한 법령이나 조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 (2)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피고가 아니므로 적용이 없고, 위 (3)에 관하여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본건 소송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의 인정 혹은 배척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4)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에는 일반적으로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일본국에 계속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장차 확정될 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설이자, 일본의 유력한 학설이며, 독일과 일본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 승인예측설에 기할 경우에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선행 사건이 진행되어 이미 제1심 판결까지 선고되었음에도 중복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영미법적 이론에 따른 검토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 남 빌 딩 9 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회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영미법적인 관점이나 일본의 이른바 비교형량설에 기초해 보더라도 그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본건 소송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은 크게 강제노동 및 원폭피폭 후의 보호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미불임금 청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의 강제노동 및 원폭피폭 후의 보호조치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모두 일본의 히로시마입니다. 그리고 미불임금 청구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미불임금의 변제를 위한 피고의 공탁은 모두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방법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나 기타 증거절차의 편리성이라는 점에서 일본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적절한 법정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일본국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조사가 진행되었기에 심리의 신속이라는 점에서도 일본국 법원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재산의 대부분이 일본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본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바 동 법률들의 해석 및 적용이라는 점에서도 일본국 법원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단지 피고의 지점도 아닌 연락사무소가 우연히 대한민국 부산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만으로 대한민국의 법원이 피고의 연락사무소의 업무나 피고의 일반적인 영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할 적절한 법정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 남 빌 딩 9 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또한 소송경합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상당한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일본국 법원이 본건 소송을 계속 심리, 진행하는 것이 사법적 효율 및 경제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일본국 법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 같은 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리 및 재판에 있어서 적절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원고들이 이미 상당기간에 걸쳐서 일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여 진행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일본국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수행하는데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일본국 법원에 진행중인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국 법원이 계속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영미법이나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비교형량설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일본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보다 적절한 법정지라고 할 것이고, 부적절한 법정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본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절한 법정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위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본건 소송을 대한민국에 중복하여 제기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본건 소송 중 원고 김돈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와 동일한 청구가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복소송을 제기한 동기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 - 7001 · 254 - 1006
F A X : (051)241 - 7003

역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본건 소송의 진행 중에 일본국에서 진행중인 관련 사건의 판결이 1심 판결 내용대로 원고들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본건 소송이 일본국 법원의 위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57, 58 판결은 기판력의 저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확정된 외국판결이 존재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외국판결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승인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국에서 진행중인 위 관련 소송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본건 소송의 진행 중에 위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다면 본건 소송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본국 법원에 제소되어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작년에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심리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조만간 종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소송의 경우에 관련 일본국 법원의 판결의 확정 및 그 승인 가능성을 판단할 때까지 귀원에서 소송절차를 기일추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중지해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국제적 중복소송의 경우에 발생하는 재판관할권 및 기판력 등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원고 김돈영의 경우에도 일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선행사건과 본건 소송에서의 쌍방의 주장 및 증거방법이 거의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문 수
변호사: 주대경 변호사: 장희석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최창용
대표전화: (051)241-7001 · 254-1006
F A X: (051)241-7003

동일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처럼 소송절차를 사실상 중지하여 일본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2001. 2.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문 수, 주 대 경

장 희 석, 이 동 준, 최 창 용

부 산 지 방 법 원 민 사 제 6 부 귀중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1가 66-1
(영남빌딩 9층)
青律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 문 수
변호사 : 주 대 경 변호사 : 장 희 석
변호사 : 이 동 준 변호사 : 최 창 용
대표전화 : (051)241-7001 · 254-1006
F A X : (051)241-7003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 7960호

원 고 박창환외 5인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설립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채권 및 미불임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중공업'이라고만 하겠습니다)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원고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1946년 법률 제7호로 제정된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특별경리회사이자 같은 해 법률 제40호로 제정된 기업재건정비법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로 되었는바, 그 뒤 1949년 7월 4일 기업재건정비법상에 의한 재건정비계획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3일 그 신청한 계획 내용대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1일 그 재건정비계획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01호)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254-1006, 241-7001
F A X : (051) 241-7003

따라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해산되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기업재건정비법상의 제2회사로서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1952년 5월 29일에 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1964년 6월 1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와 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1952년 6월 1일 미쓰비시일본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1952년 5월 27일에 미쓰비시조선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상 3개 회사를 '제2회사 3개사'이라고만 하겠습니다)가 각 설립되었습니다. 그 뒤 1964년 6월 30일 제2회사의 3개사 중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다른 2개사를 흡수하는 형태로 하여 위 제2회사 3개사들이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2차대전 전의 구 미쓰비시중공업과는 별개의 법인인바,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 및 미불임금청구는 피고 회사가 아닌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것이 소장 기재에서 명백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산처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후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상의 특별경리회사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특별경리회사는 동법 제1조 제1호에서 정한 일정한 시점(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를 의미하며, 이하 "지정시"라 합니다)에 신 회계계정과 구 회계계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동법 제7조 제1항), 지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목록상의 동산, 부동산, 채권 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01호)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254-1006, 241-7001
F A X : (051) 241-7003

타 재산중 '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 진흥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신 회계계정에,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조 제2항). 또한 특별경리회사는, 지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은 신 회계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그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수입 및 지출은 구 회계 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회계상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물론 위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제7조는 적극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항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동법상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의 목적이 전쟁으로 인한 보상을 중지함으로 인하여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여 민간 수요의 생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전시 보상 중지에 수반되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필요한 조치를 확립하는 것이라 해석되는데다가, 나아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특별경리회사에 대한 채권은 '구채권'으로 표현하고 있어(동법 제12조) 당연히 구 회계계정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이미 발생한 특별경리회사의 채무는 모두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미불임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01호)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254-1006, 241-7001
F A X : (051) 241-7003

채권 및 이와 관련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는 그 발생 원인이 모두 지정시인 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 이전이므로 구 회계계정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전신인 제2회사 3개사는, 기업재건정비법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인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신 회계계정에 속하게 된 자산을 출자받아 설립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동 법 10조 1항에 따르면 그 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지정시 이후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신 회계계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채무만을 승계하게 됩니다.

한편 기업재건정비법의 목적은, 전시보상의 중지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이를 합리적이고도 원활하게 처리하여 경제계의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거의 손실을 일체 정리하여 기업의 급속한 재건정비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재건정비법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제2회사 3개사는 종래의 특별경리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종래의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경리주식회사가 신 회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업재건정비법 제10조에서는 특별히 제2회사는 지정시 이후 발생한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신 회계계정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며, 이 규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제2회사가 특별경리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당연히 포괄승계하게 되는 것으로는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01호)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254-1006, 241-7001
F A X : (051) 241-7003

입와 같이 관련 법률 규정들이 제2회사가 특별경리주식회사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포괄승계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면 제2회사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권리의무를 인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별

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일본의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회사 3개사는 위 기업재건정비법 및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에 의하여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이상, 제2회사 3개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피고회사 역시 당연히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지정시 이전의 사실에 근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미불임금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보론

한편 원고들이 기존에 제출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1999년 3월 25일 선고 판결의 한국어 번역에 일부 오류 및 오타 등이 있어 이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판결문 번역상의 오류

(1) 5면 '1. 청구' 기재란의 을사건 청구 1번 항 : 원고들에 대하여 뒤에 "연대하여 각 금 1100만엔 및 이에 대한"이 누락

(2) 6면 병사건 청구 1번 항 : 원고 김춘식, 방훈재 누락

(3) 7면 '5. 본건의 쟁점' 국가의 책임 3항에 '상'자가 중복기재

(4) 8면 6.항 마지막 괄호 (별회사론)으로 수정되어야 함

(5) 11면 두번째 문단 : '1867년'이 아닌 '1912년' 임

(6) 12면 '(2) 손해배상의 법리' 마지막 줄 : '적용하지 않는'은 '적용 내지'로 수정되어야 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01호)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254-1006, 241-7001
F A X : (051) 241-7003

이 정확한 번역임

(21)59면 (5)항 첫번째 줄 : '용서받을 수 없는가'가 아닌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가 정확한 번역임

2001. 11. 16.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 창 용

부산지방법원 제6사부 귀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01호)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254-1006, 241-7001
F A X : (051) 241-7003

준 비 서 면

사 건 : 2000 가합 7960호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근 목 외 5

피 고 :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는 기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따라서 원고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근거로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해 구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은 소위 구 회계계정채권으로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국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의 법률이 외국인인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가사 외국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채권은 피고주장과 같이 소위 구 회계계정에 속하여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가 면책받을 성격의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피고회사는 전쟁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상호와 기업마크를 사용하며 그 스스로 전쟁전후를 통하여 기업으로서의 동일성을 주장하여 왔을 뿐만이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왔던 선행태도에도 반하는 신의칙 위반의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피고는 일본국의 기업재건정비법에 의하여 전전의 피고회사는 해산하였고 그 현물출자에 의해 3개사(이하 제2회사라 함)가 설립되었고 이후 위 3개사가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회사가 되었으므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을 하나 위 각 해산 및 설립실태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가.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연합국은 일본국에 주둔하게 되자 다시는 일본국이 침략전쟁을 도모하지 못하게 전시체제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들이 군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침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 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략전쟁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려왔고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벌을 해체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역시 침략전쟁을 통하여 막대한 기업이익을 올린 대표적 기업이었기에 그 분할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회사도 일시 3개로 분리된 것이나 제2회사 설립당시에 이미 재통합에 의하여 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즉 구 회사는 1950년 1월 새로 설립된 제2회사 3개사에 그 영업을 인계하고 해산하였지만 이 제2회사는 전전의 피고회사를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제2회사의 설립목적을 보면 전전 피고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그 유기적 일체인 영업용 재산이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종업원의 지위도 승계되었고 제2회사의 각 사장도 전전 회사의 상무들이 취임하였고 경영진마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 내에서는 사보를 발행하여 '전 종업원에게 고함.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하라'라고 외치며 "3사의 분할은 국법에 따른 것으로 결코 우리들의 의사는 아님을 5만 종업원 여러분들은 명심하라.--- 3사 분할은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나온 회사방위의 긴급조치이다.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 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대기업의 형태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 될 때는 대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소기업의 형태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 될 때는 소기업의 형태가 되고---" 라고 하여 법에 의해 회사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피고로서는 불변인 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고 제2회사 설립시에도 피고회사와 동일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동일성을 자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 위 제2회사는 '미쓰이, 미쓰비시,스미토모'의 3대재벌 칭호와 상표 사용을 금지한 GHQ의 정책에 기초한 령에 따라서 '미쓰비시'의 명칭조차 사용하지 아니하였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 후에 위 령이 폐지 되자말자 3사는 미쓰비시라는 상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쓰리 다이어몬드 상표를 사용하였고 다음해 1953년에는 전전의 미쓰비시협의회 기능을 하였던 미쓰비시계 기업의 최고연락회의인 '금요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기업재건정비법상의 제2회사 3개사로 분할되었지만 이것이 재통합하여 전의 사업을 계속하였고 유기적 일체성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하였던 것입니다.

라. 아울러 무엇보다 피고 스스로 전전과 전후 피고는 동일성이 있음을 자인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 미쓰비시 그룹은 기회가 있을 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 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마다 창업이래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여 왔고 본건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의 무대였던 피고회사의 히로시마제작소에서도 1995년에 "미쓰비시중공업히로시마제작소 50년사"가 제작되었고 거기에는 전전에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히로시마제작소, 동 기계제작소가 설치되게 된 경위와 그 종업원 확보시 원고들과 같은 조선인 징용공으로 이를 충당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 그러하기에 피고는 원고들이 같은 입장에 있는 피해자들과 동지회를 결성하여 전후 보상 교섭을 거듭하여 왔을 때 별개회사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이며 보상교섭에 대해 대응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 1968년 1월에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피고에게 미불임금을 청구하였을 때 "미불임금에 대하여는 사내외 관계처에 연락을 하여 여러가지 조사를 하였던 바 보상문제는 일단락되었고 ---"라고 회신을 문서로 하였으며 1974년 8월에 위 협회임원과 일부 원고들이 피고회사 동경본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딱한 입장을 고려하여 원조의 방법이 구체화된 단계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회답하였고 그 후 원고 정창희에게는 동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 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에서 피고가 별개회사론을 주장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고 선행행위에도 모순되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별개 회사론의 법적 주장에 대해

가. 일본국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은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극히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법률입니다. 위 법률들은 일본국이 기업등에 대한 보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기업이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영위기에 처할 것을 고려하여 전쟁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피고와 같은 기업에 특별한 경리조치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신속히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일본국의 법률입니다.

원고들에게 위 양법들이 적용되어야 할 우리 법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일본국이 전범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우리 법의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이를 원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 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나. 뿐만 아니라 위 양법이 원고들에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위 양법이 노동채권과 불법행위채권을 제2회사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실제 위 양법에 의하면 노동채권은 일반거래에 의해 생긴 채권과 달리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주체의 변경에 의해 노동채권이 일방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함은 일본국의 판례법리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1) 위 양법에 의하더라도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지정시 이전에 확정된 급료 그외에 명령으로 정하는 정기적 급여채권', '종업원이 맡긴 금원', '지정시 이전에 확정된 퇴직금 그외에 명령으로 정하는 임시적 급여채권'등은 신 회계계정으로부터 지불이 인정되고 있고 구 회사의 종업원이 제2회사 설립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구 회사와 제2회사가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매우 탄력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2) 아울러 원고들의 채권은 대한민국을 이행지로 하는 일본의 재외부채입니다. 일본법률에 의하면 만약 해산회사의 경우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라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 금전을 특수관재인에게 보관을 시켜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외부채로서 소멸이 예정되지 않을 성격의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단순히 계정상의 이유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일본국의 판례에 의하여도 영업양도, 위장해산,조직변경등 경영주체의 변경만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일방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구회사의 인적 구성이었던 피용자에 대하여 신회사는 신의칙상 별인격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져 왔습니다.

다. 이와 같이 피고는 구 회사로부터 제2회사에 승계되어야 할 신회계계정중에 원고들 주장의 채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지 않음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위 양법 자체가 신회사가 이러한 채권을 승계할 것을 배척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위, 제2회사의 설립과 재통합의 경과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별개 인격을 내세워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으로도 용납할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 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2. 3.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 완 익

법무법인 부 산

담당변호사 정 재 성

부산지방법원 귀중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 산

전 화(051) 951-7 0 0 0
FAX(051) 951-7 0 0 1
공증실(051) 951-7 0 0 7
E-mail:busan@hananet.net

증거 및 참고논문 제출서

사 건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 고 박창환 외 5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 및 참고논문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제출하는 증거 및 그 설명

가. 을 제1호증 **판결문 및 번역문**

(1) 개요 :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징용공들이 피고 회사 및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일본국 나가사끼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제 1심 판결문

(2) 입증취지 :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하여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이 적용됨에 따라 신설된 피고 회사는 구 미쓰비시중공업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로서, 가사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507-1006 F A X : (051) 507-1010

위함.

나. 을 제2호증 판결문 및 번역문

(1) 개요 :

한국 및 중국인들이 피고 회사를 비롯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문

(2) 입증취지 :

2차 세계대전 중의 징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미합중국 법원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사실.

2. 참고논문 및 그 취지

가. 참고논문 1 국제소송경합 및 번역문

제출취지 :

국제적인 중복소송의 처리 및 해결에 관한 미국 및 일본의 실무례와 국제적인 중복소송의 경우 선행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후행소송의 재판절차를 중지 내지는 정지할 필요성에 관련한 논의

나. 참고논문 2 정인섭,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제출취지 :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청구권의 범위는 열거된 8개 조항에 한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는 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507-1006 F A X : (051) 507-1010

2002. 3.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률

담당변호사 최 창 용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 귀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507-1006
F. A.X. (051) 507-101

8/14수령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 고 박 창 환 외 5명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대한민국과일본국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만 합니다)의 체결 경과 및 주요 내용

가.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과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당시의 국민감정과 국내의 여건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국교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던 중 전후처리를 위하여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이 1951년 9월에 조인되어 조만간 일본의 주권회복이 예정되자 양국간의 국교의 정상화 및 과거사의 청산문제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대하여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 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대한민국의 참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TO:055 753 6963 P.001 015

가 배제된 채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대한민국이 위 조약의 제2조, 제4조, 제9조,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51년 10월 20일부터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동경에서 개시되고 1952년 2월 15일부터는 제1차 한일회담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무려 14년 동안이나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2년 10월 20일과 1962년 11월 12일의 2차에 걸쳐 대한민국의 金鍾泌 특사와 일본의 大平 의상간에 개최된 협상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이 양국간에 합의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청구권 문제 해결의 명목을, 대한민국이 청구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무상경제협력과 유상경제협력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를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으로 하고, 둘째 일본은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에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간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연간 3.5% 7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10년에 걸쳐 제공하고 또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관계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일본국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 체결되고 이는 1965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 청구권 협정의 주요 내용

청구권 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상의 원조 및 차관의 제공 등을 밝히고 나서 제2조에서는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의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해석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입증을 갖고 진하게 표시하였습니다.)

2. 협정 제2조에 관하여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b) "특별조치"라 함은 일본국에 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로 발생한 사태에 대처하여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국에서 취해진 전후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에 의거하는 특별 약정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c) "거주한"이라 함은 동조2(a)에 기재한 기간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던 그 국가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d) "통상의 접촉"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 일방국의 국민으로서 타방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지점 폐쇄를 행한 법인을 포함함)의 귀환시까지의 사이에, 타방국의 국민과의 거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점림빌딩 4층) 법무법인 정률(正律) 대표전화 (051) 507-1001, 1006 FAX 507-1010 중중소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동, 종전후에 발생한 특수한 상태하에서의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조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 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f) 한국측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후 1947년 8월 15일전에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고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고, 일본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h)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에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 위 합의의사록(i) 2 (g)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靈(淸律) 대표전화 (051) 507-1001, 1006 FAX 507-1010 공증실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항목에 속하는 청구권은 모두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바, 그 8개 항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권 제시 8개 항목

(1) 조선 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 및 地銀 반환청구

(2) 1945년 8월 9일 현재의 대조선총독부채권의 返済청구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振替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5)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返済청구**

(6)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7) 전기 제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청구

(8) …전가의 반환·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 시기에 관한 항목

이러한 청구권 제시 8개 항목 중 본건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제(5)항 및 제(6)이라고 할 것인바, 제(5)항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商律) 대표전화 (051)507-1001, 1006 FAX 507-1010 중중실 (051)507-1011, 1012 FAX 507-1013

10:05S 7S2 6963 P.005/011

구권의 返濟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 통화

(다) 피징용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 일본정부 請求恩給관계

(바)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청구

다. 청구권 협정 체결 후의 국내조치

청구권 협정은 제2조에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포괄적 권리의무관계가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 조약이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취하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청구권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도 해결된 것으로 합의되었으므로 각 개인에 대한 국내보상문제가 바로 현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966년 2월 19일 법률 제1741호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대한법률이 제정되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受入)되는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청구권자금은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되어야 하는바(동 법률 제1조), 구체적으로는 청구권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과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동 법률 제4조 제1항),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051) 507-1001, 1009 FAX 507-1010 공증실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확충하는 사업(동 법률 제4조 제2항),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의 보상(동 법률 제5조 제1항)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 1971년 1월 19일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이 법률 제2287호로 제정되었는바, 동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 10개월간 민간 소유의 대일청구권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그 신고대상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원칙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 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동법 제2조 제1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접수된 민간청구권 신고에 대하여 실제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21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 법률 제2685호로 추가로 제정되었고 보상금 지급기간은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총 83,519건에 대하여 9,187,693,000원의 보상금이 현금 또는 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가 수리된 청구권만을 그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위 법률 제2조 제1항),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redacted] 법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정률(商律) 대표전화 (051) 507-1001 1006 FAX 507-1010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률 제10조 제5호). 그리고 보상대상인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 제10조 제3호).

이러한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청구권자금에 의한 민간청구권의 보상을 정한 관련법률에 의하여 민간청구권은 보상절차가 완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은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대상을 사망자로 한정하고 있었고, 실제 그 시행과정에서도 보상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그 신고의 수리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므로 민간청구권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실제 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자가 전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관련법률에 의하여 보상절차가 완료된 이상 그 보상절차에서 누락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간의 국내법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제법상의 조약인 청구권협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된 권리의무관계는 그 국내적 보상실시나 그에 대한 개인적 만족여부와 관계없이 협정의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권리보호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간의 문제로만 남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논문 2. 정인섭,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 성곡논총 25집 상권(1994), 성곡학술문화재단 참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051)507-1001, 1006 FAX 507-1010 공증실 (051)507-1011, 1012 FAX 507-1013

2. 청구권 협정의 주요 쟁점과 해석

가. 외교적 보호권만의 포기 인지 여부

원고들은 준비서면에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합의로 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란 예컨대 국민들이 자신의 청구권을 정부에게 처분하도록 위임한 경우이거나 청구권 처분에 관한 다른 국가와의 조약을 국민들이 승인한 경우 등이라고 하면서 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조항은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당시인 제3공화국 헌법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비준된 조약은 별도의 시행법률을 요하지 않고 직접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직접 적용됨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청구권협정도 별도의 국내법 조치 없이 비준 공포만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1951년 9월 8일 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의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 및 현재의 해당지역의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와 일본에 있어서의 전기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4조 (b)의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미합중국 군정에 의하여 취하여진 일본과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라고 한 규정드 일본국민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외교적 보호권 포기 이상의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 한일회담시 일본이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민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사유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정부가 대일평화조약을 기초한 미합중국 정부에 제4조에 효력에 관한 견해를 문의하였을 때, 미국으부는 1952년 4월 29일자 공식서한으로 (a)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a)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관할내의 일체의 일본자산은 미군정청의 관계지령 및 조치에 의하여 모든 권리근원과 이익이 박탈되었으므로 일본은 유효히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b) 제4조 (b)항은 동조 (a)항의 특별협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진행되는 관련사건에 제출된 미국 정부의 의견서(을 제3호증)에서 미국 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 따른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할 내의 일본자산이 평화협정에 의하여 미군정당국에 의하여 동결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된 사실을 확인하여 평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정 률(靑律) 대표전화 (051) 507-1001, 1006 507-1010 공증실 (051) 507-1011, 1012 507-1013

TO:053 753 6963 P.011 01

화협정의 조치의 효력이 확정적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의견서는 평화조약 및 그 후 대한민국, 중국 등과 일본국 사이의 개별적인 협정으로 이루어진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적인 틀이 개별적인 소송으로 인하여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미국 정부의 공식서한의 내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위 공식서한의 취지에 따라 일본국민의 대한(對韓)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과 일본법원과 국내 및 일본의 학자들 역시 일본국민의 대한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위에서 밝힌 조약과 그 해석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그 준비서면에서 인정한 일본국민들의 한국정부나 한국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도 언급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의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미합중국 군정에 의하여 또는 그 지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것이라는 주장은 국가는 국민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국제조약의 효력에 관한 전제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해결에 합의하였으면 당사국은 당연히 이를 국내법적으로도 소멸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멸될 사적 권리의 처리방식은 기본적으로 조약의 국내적 효력의 문제로 귀착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淸律) 대표전화 (051) 507-1001, 1006 FAX 507-1010 공증실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것인데,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조약의 국내적 직접 적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권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이에 대한 단순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그 협정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의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가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제법 기본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과 비슷한 내용의 헌법조항을 가진 일본에서도 조약상 국민의 청구권 포기가 곧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일본국민의 대연합국 청구권 포기조항에 관하여 이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본국민의 청구권도 소멸할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하는 다수의 일본 판례를 통하여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

앞에서 살펴본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대일평화조약 제4조 (a)에 포함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국 및 그 국민의 타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협정의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전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051)507-1001 1006 FAX 507-1010 중중실 051)507-1011,1012 507-1013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청구권 협정에서 고려하는 인적 주체간의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청구권 협정의 합의의사록(I)에서는 이를 다시 부연하여 여기서 재산, 권리 및 이익 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고 함으로써 청구권 협정의 문언의 해석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청구권 협정의 문언과 체약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한일회담 시부터 대한민국은 일본국에 대하여 앞에서 본 대일 청구 8개 요강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하였는데 청구권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8개 요강에 속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도 협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청구권 협정의 합의의사록(I)에서는 앞에서 말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u>포함되어 있고</u>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8개 항목에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기타 청구권의 반제청구와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고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이 기타의 권리를 포함하는 일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개 항목은 그 자체로도 어느 권리라고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권리의무관계의 해결을 기도한 것이며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양국의 입장도 구체적 대상항목의 특정이나 나열을 피하고 양국간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청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한편, 청구권 협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는 보상청구권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며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종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청구권 협정의 문언과 체약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한 해석으로서 청구권 협정을 공정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국내법적 구분을 국제법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배상이나 보상이란 용어는 국내법적 의미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관계에서 배상이란 국내법적 의미와는 달리 전쟁의 결과 전승국에 대하여 패전국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이란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일제기간 중에 범어진 위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경우도 전후보상소송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즉 전후배상이라고 하여 평화조약에 기하여 패전국이 전승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치적 책임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라는 의미로는 국내법적인 용어와는 달리 보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청구권행사가 배상적 요구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국내법적인 위법행위 손해배상, 합법행위 손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천 위 빌 딩 4 층) 법무법인 청 률(淸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5 FAX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보상이라는 구분을 전제로 한 배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한국대표단이 8개 요강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치적 근거나 배상적 성질의 것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을 때(1961년 11월 16일 제6차 한일회담), 그 배상의 의미도 이러한 국내법적 구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으며 이는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전승국의 입장으로서의 요구라든가 식민지배에 대한 정치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었습니다.

만일 청구권 협정의 체결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이 배상과 보상의 그 별에 그토록 민감하였고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과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의 구분에 엄격하여 보상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배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면, 그토록 지극히 포괄적으로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 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또 일방의 타방에 대한 모든 청구권 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까지 청구권 협정의 유일한 예외조항인 제2조 제2항에서 같지 1947년 8월 15일 이후 타방체약국에의 거주사실과 1945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과정에서 취득된 사실만을 그 모든 청구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제외된다는 표현이 한다더의 언급도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도 아니고 국가간의 정형적이고 정치한 조약의 작성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권 협정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산, 권리, 이익이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37-1 법무법인 청 률(靑律)
(청림빌딩 4층)

라고 상호간에 양해된 이상 여기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청구권 협정의 적정한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건 원고들 주장의 청구권에 대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

그렇다면, 원고들이 본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권리인 피징용 한국인의 미불임금청구와 전쟁중의 징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 협정의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청구권 협정의 일방 체약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타방체약국인 일본국의 국민에 대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실체적 권리의 주장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회담을 통하여 제기되고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완결되어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본건 소송으로 청구하는 권리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의재산및청구권에 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002. 8.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률

담당변호사 최 창 [illegible]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TO:053 753 6563 P.017 01

8/21 17:40 수령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7960 손해배상(기)

원 고 남 창 환 외 5명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미불임금의 내용은 이미 50년 이상이 경과한 사항들로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송으로써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최장 10년이며 불법행위채권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이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766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불법행위 및 미불임금채권의 청구가 이러한 소멸시효의 제한을 피하려면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이 사건의 소제기일인 2000. 5. 1. 로부터 10년 이전이 되는 1990. 5. 1. 이후가 되어야 하겠으나, 50년 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1990. 5. 1.이후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정 률(淨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TO:053 753 6562 P.001-005

원고들은 1965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이하, '청구권협정' 이라 합니다)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이 있었던 1991. 8. 27.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우선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어떠한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국회에서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법률적인 관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 38364 판결 참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발언은 청구권협정의 문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의 당사자인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바 없고, 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청구권에 있어 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원고들은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양국간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집행이 지연되더라도 다시 소멸시효의 완성을 위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 장애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 이를 법률적 장애로 본다고 하더라도 1965. 6. 22.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나아가 1965. 6. 22.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인해 원고들의 이 사건 권리행

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보호조치만이 취하여지는 차별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히로시마에서 노동을 하였고 원폭피해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 본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 자체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와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히로시마 조선소를 비롯한 두 공장은 1944. 3. 15.에 개소한 당시의 최신공장으로서(을 제4호증 38면 및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각 참조), 그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의 사안인 중국인 징용자들이 근무한 미쓰이 광산과는 달리,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설비가 구비된 기숙사와 병원 등의 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을 제4호증 47, 48면, 53면 및 을 제5호증의 6 각 참조). 따라서 당시가 종전 직전의 전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근로조건이,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고 김톤영이 본인신문시에 인정한 바와 같이 히로시마의 두 공장에서는 작업의 난이도에 불문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였고 광산의 경우와 같은 비인간적인 차별대우가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원폭투하지점이 두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였기 때문에 원폭투하시점에 두 공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전부 3명으로 이중 원고들과 같은 대한민국 징용자들은 없었습니다(을 제4호증 제52면 및 을 제6호증 각 참조).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중 사상자들은 일본국인이거나 대한민국인이거나 불문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건물 및 원폭투하 후에 설치된 야전병원에서 가능한 치료를 받았습니다(을 제4호증 제52면 참조).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청구권협정을 들어서 원고들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답변하였다가 이제 와서 청구권협정이 아닌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일관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음을 다투는 한편, 추가적으로 가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도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보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신의칙에 위반한 방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 원고들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하여는 국내법상으로도 시효란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건이 과연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가혹한 노동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노동조건이 가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더러(을 제4호증 참조),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특성상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입법이 없는 이상 그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1996. 12. 19.선고 94다22927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특별한 국내입법이나 법적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그리고 원고들의 청구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아닌 미분임금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은 미분임금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점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거나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바, 이 사건과 동종제소가 문제되는 1999. 3. 25. 선고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은 물론 대다수의 일본국 법원의 판결 역시 시효 또는 제척기간(일본국 법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의 도과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내지는 유사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지적한 소송요건 흠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것이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 8.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507-1013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률

담당변호사 최 창 원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귀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8/23 p 8/23 11:10수령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 7960 손해배상(기)

원 고 박창환 외 5명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언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고,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원은 1945. 7.부터 9.까지의 미불임금, 국민저금 상당액 및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송금을 약속하였다는 월급의 2분의 1 상당액의 3가지 부분이나, 이하에서는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총칭하여 미불임금청구권 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상의 점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변론을 준비하겠습니다.

2. 이 사건 소제기의 부적법성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관할의 부존재

이미 답변서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본건 소송은 본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산연락사무소가 지점 내지는 영업소로서 그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산연락사무소는 그 인적구성이나 규모, 실제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법원이 본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기에 충분한 지점이나 영업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 부산연락사무소에서는 피고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부산연락사무소와 관련하여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대표자의 선정이나 영업소의 설치등기(상법 제614조 참조)가 경료된 바도 없습니다(자세히는 피고 제출의 답변서 제3, 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제11조(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이 본건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 제출의 답변서 제4 내지 6면 참조), 위의 각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본건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해석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확장 해석한다면, 이는 거래의 안전 및 예측가능성과 같은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원고들은 국가주권에 기한 국민의 보호를 운운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세계적인 교류 및 통상이 증대된 국제화된 사회에 있어서 자국의 법원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나 제정된 입법의 규정에 반하여 자국민을 특별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국수주의적인 사고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자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본건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참작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 및 **원고들이 스스로 일본국의 재판소가 본건 소송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짐을 인정하여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본건 소송의 경과 등을 살펴보면, 본건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것은 일본국의 재판소이지 대한민국의 법원이 본건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중복제소

또한 원고들이 제기한 본건 소송은 원고들이 소장에서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본건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일본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가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일본국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수년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가사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 중첩적인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피고의 2001. 2. 7.자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제적 중복제소는 모순되는 판결이나 이른바 국제적인 사법전쟁 등의 상

태를 야기하여 국제적인 거래의 안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원고들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부산지방법원에 본건 소송을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외국에서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소송 내에서는 물론 소송 외에서 피고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재판외적으로 본건 분쟁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하려는 부당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피고의 2001. 2. 7.자 준비서면 제4 내지 6면 참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적인 중복제소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통설은 독일 및 일본에서의 통설의 태도와 같이, 외국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장래 대한민국 내에서 승인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승인예측설입니다.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대한민국 내에서 장래 승인이 예측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위치한 일본국 재판소는 본건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일본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송달상의 문제도 없으며(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본건 소송의 사안은 재산권에 대한 판단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가능성도 없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는 상호보증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재 본건 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들이 근무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와 기계제작소의 2개의 공장은 모두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시내 중심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서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원폭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소장 제25면 원고 김돈영 부분 및 소장 제29면 원고 정창희 부분 참조,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서는 원폭투하로 인하여 3명만이 사망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제4호증 및 을 제6호증 각 참조), 원고 이병목, 김돈영을 비롯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 원자폭탄 후에 설치된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소장 제22면 원고 이병목 부분 및 원고 김돈영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참조), 구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파괴된 기숙사 대용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였고(소장 제22면 원고 이병목 부분 및 원고 김돈영 본인신문결과 참조, 을 제4호증 참조), 2,3일 후부터는 공장에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식사 배급을 재개하였으며(소장 제30면 원고 정창희 부분 참조),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패전으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인 1945. 9. 중순경에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비용으로 배편을 마련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귀국조치를 취하여 원고 김돈영의 경우에는 구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수배한 배편에 무료로 승선하여 귀국한 사실(소장 제26면 원고 김돈영 부분 및 원고 김돈영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참조)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다. 또한 원고들이 근무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와 기계제작소의 2개의 공장이 모두 당시의 최신식 공장으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나 병원 등의 후생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제4호증 및 5호증의 6 각 참조)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 청구권의 소멸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 청구권이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가. 청구권협정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미불임금채권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에 따라 소멸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002. 8. 14. 자 피고 준비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위 협정에서는 제2조 제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

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고 하였고, 다시 제2조 제3항에서는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에서는 위 협정 제2조에 관하여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미불임금청구권은 모두 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대한법률(1966년 2월 19일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85호) 을 각 제정하여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청구권자금을 사용하여 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행한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 증 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있습니다. 한편 일본국에서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소화 40년 법률 제144호) 이 제정되어 청구권 협정 및 위 법률에 의하여 청구권 협정 제2조 제3항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1965년 6월 22일에 원칙적으로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은 이처럼 청구권 협정 및 청구권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후속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가가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며,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전 위임이나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의 단순한 외교보호권에 불과하지 개개인의 실체적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위임을 받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개 국민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어느 조약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되면 국민들로부터 별도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

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이상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개개 국민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은 일본국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개개인의 실체적 권리인 청구권이 아니라, 외교보호권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일본국 내에서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언급하는 일본국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답변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청구권 협정의 문언상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해석된다는 점은 원고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원고들 제출의 2000. 10. 30.자 준비서면 제1면 참조). 그리고 일본국 재판소는 일관되게 청구권 협정 및 그 후속법령에 의하여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판결하고 있으며(참고자료 3 참조), 본건 소송의 일본국내에서의 선행소송의 1심 과정에서 청구권 협정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였기 때문이지, 일본국 재판소에서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단순히 외교보호권만이 소멸되었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나. 공탁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불임금청구권 중 미불임금 및 국민저축 상당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 스스로도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1948. 9. 7.경 1945. 7. 내지 9.분 미불임금 및 국민저축 상당부분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소장 제43면 및 원고들이 2001. 2. 9. 참고자료로 제출한 1999. 3. 28. 일본국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된 원고들이 일본국에서 본건 소송 이전에 제기한 선행사건에 대한 판결 번역문 제60면 및 을 제7호증 각 참조), 결국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단기 3년 및 장기 10년의 시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미불임금청구권에 대해서는 노역인의 임금에 대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4조 제3호),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근로기준법 제48조)은 물론 채권 일반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가사 일본국법이 준거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국 민법 제724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20년의 제척기간, 일본국 민법 제167조 제1항에 의한 채권 일반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 또한 역수상 명백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1965. 6.까지는 한일간 국교단절로 인하여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본국에서 피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존재로 인하여 소송의 제기가 곤란한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하였고,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 귀원에서 심리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청구권 협정이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적인 장애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일본국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개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1991. 8. 27.의 다음날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의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국장의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발언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소급해서 복멸시킨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 위 기간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은 이미 완성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합니다.

원고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인 범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대해서는 국내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반인도적인 범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 국내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국내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반인도적인 범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확립된 바 없고, 피고의 기존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의 2002. 8. 21. 제출 준비서면 참조) 본건 사안이 반인도적인 범죄라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으며,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기하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조건이 반인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소멸시효기간 부적용 또는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4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기된 본건 소송과 유사한 사건에서 미국법원 역시 그 원고들의 청구를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제2호증 참조).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본건 사안이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미국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5. 피고의 동일성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적법하게 존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피고의 2001. 11. 17.자 준비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미불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1946년 법률 제7호로 제정된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특별경리회사이자 같은 해 법률 제40호로 제정된 기업재건정비법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로 되어, 1949년 7월 4일 기업재건정비법상에 의한 재건정비계획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1950년 1월 11일 인가된 재건정비계획에 따라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해산되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기업재건정비법상의 제2회사로서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와 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 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가 각 설립되었습니다. 그 뒤 1964년 6월 30일 제2회사의 3개사 중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다른 2개사를 흡수,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 회사가 된 것입니다.

한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상의 특별경리회사는 동법 제1조 제1호에서 정한 지정시인 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에 신 회계계정과 구 회계계정을 설정하도록 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어 있는바, (동법 제7조 제1항), 지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목적인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및 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신 회계계정에,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조 제2항). 또한 지정시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 특별경리회사에 대한 채권 역시 구채권 으로서 구회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2조). 한편 피고 회사의 전신인 제2회사 3개사는, 기업재건정비법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인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신 회계계정에 속하게 된 자산을 출자받아 설립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동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지정시 이후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신 회계계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채무만을 승계하게 됩니다. 당시 구 회계계정에 속하는 재산과 채무는 신설된 제2회사 3개사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능중에 승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미불임금채권 및 이와 관련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는 그 발생 원인이 모두 지정시인 1946년 8월 11일 오전 0시 이전이므로 구 회계계정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 회계계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채무만을 승계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을 제1호증 판결문 중 二 피고 회사의 책임, 2 피고 회사에 의한 채무 승계 부분 참조, 번역문 제39면 내지 제43면) 그리고 제2회사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호를 속용한 바 없으며, 각 거래처에 대하여 연명으로 제2회사 3개사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구 회계계정에 속한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 증 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사실도 있으므로 상법 소정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도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일관되게 구 미쓰비시중공업과의 동일성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별개의 법인이므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발행한 책자 등에 구 미쓰비스중공업을 포함한 과거의 연혁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피고의 전신인 제2회사 3개사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음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영업양도, 위장해산, 조직변경 등의 경영주체의 변경만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일방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구회사의 인적구성원이던 피용자에 대하여 신회사가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업재건정비법 및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같은 적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2회사 3개사의 신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장해산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법률주장이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급여채권 등은 두텁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정시 이전의 확정된 급료, 종업원이 맡긴 금원, 지정시 이전에 확정된 퇴직금 등이 신회계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 증 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정에서 지불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재건정비법 및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즉 지정시 이전의 급료 등을 신회계계정에서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특별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도 신회계계정의 대차대조표의 미정리지급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회계계정에서 일정한 경우에 구회계계정에 속하는 급여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2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제2회사는 그러한 급여채권 등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특별한 경우에 구회사의 신회계계정에서 급여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관련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마치 제2회사가 항상 구회계계정에 속하는 급여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 일본국 나가사끼 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일본 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을 제1호증 참조).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본건 소제기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 증 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자료인 전후보상속보의 기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상 및 피해복구 등은 전세계의 국가에 있어서 특별법의 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러한 보상 및 피해복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의 발로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법률 하에서는 이러한 보상 및 피해복구 조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여 귀원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3호증	미국정부의견서
1. 을 제4호증	히로시마 제작소 50년사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각 사진
1. 을 제6호증	원폭피해지도
1. 을 제7호증	공탁서
1. 을 제8호증	후생성 고시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4	근로조건 대비표
1. 참고자료 5	신문기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증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

2002. 8. 23.

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률

담당변호사 최 창 용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귀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 림 빌 딩 4층)
법무법인 청 률(靑律)
대표전화 : (051) 507-1001, 1006 FAX : 507-1010
공 증 실 : (051) 507-1011, 1012 FAX : 507-1013